

[별표7]

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(제22조제1항
관련)

1. 도안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.



2. 도안의 크기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.
3. 도안에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서 등급, 유효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.